

임연학 회장에게 듣는다
- 98년 생약협회 사업방향



무한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역시 협회의 만성적 적자운영이

다. 또 중앙 및 지방조직의 타성적 운영, 낮은 대외인지도, 농협 등 기존조직과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큰 과제다.

우선 재정자립의 실현을 위하여 임대료등 제반 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실시, 중앙조직의 업무체계 일원화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리추구를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지역별 특화품목 선정 및 지역별 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 안정적 생산장려 및 생약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수국산 생약을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 '품질인증마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업체들의 국산생약 소비를 적극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또 생약연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생약의 산업화와 연계한

이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 도지부로 이관, 도별 역할분담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지부(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배생약에 대한 통계 조사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생약 종묘 분야에 관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효율적 활용, 식품용과 수입엑스제 반입 제한을

수익사업 창출, 조직활성화
품질인증마크제 시행 계획

현실적인 연구과제를 선정, 수행해 나간다면 생약의 고부가가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하계수련대회, 자생약초 식지 답사 행사,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도

위한 대처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실현가능한 단기적 사업과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사업을 구분 설정하고 단계적 실천을 통하여 협회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생각이다.

69개품목 제조업소만 제조
복지부, 한약품질 관리규정 개정고시

오는 5월 1일부터 한약재의 안전성검사등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모든 한약재는 위생포장 후 각종 표시사항을 표기, 판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향상과 소비자보호, 국산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4월2일자로 확정, 고시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수입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한약재 유통체계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 종전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지정된 36개 품목외에 위·변조 중독우려 등이 있는 33품목을 추가, 모두 69개 품목은 반드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했다.

국산한약재 등을 농가나 판매업소에서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연1회이상 품질검사를 실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후 검사방식은 통관전 검사체제로 전환, 불량 수입한약재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수입한약재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시험연구소 이외에 한국식품위생

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종래 제조업소는 도매업소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소매, 한방병의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철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 시행시기를 5월 1일로 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재 중 한약 판매업소에서 보관중인 것은 금년 8월말까지 단순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필수수치(법제)품목=건강(초탄, 포) 녹각교, 대황(주초, 초탄), 두충(염,

강, 초탄), 반하(강, 범, 곡), 보골지(염초), 부자(염, 제, 포),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 염), 우담남성, 원지(제, 말), 주사(분), 지유(초탄), 토사지(염초, 주초), 파극천(염, 주, 제), 형개(초탄), 희첩(주충)등 18 품목

△위변조 우려품목=갈근, 감국, 계지,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산,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등 24품목

△중독우려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등 7품목

△기원 및 형태문제 품목=육계, 후박 등 2품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 18품목

녹용회분 25% 이하만 인정기로
식약청, 23~35%의 별도규격설정 불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달 31일 녹용등의 개정안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녹용회분 25% 이상~35% 이하 부분에 대한 별도 규격설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녹용 회분함량 기준을 25% 이하로 하는 내용을 개정 공포한 후 회분함량 25% 이상~35% 이하 부분에 대한 별도 규격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분함량 25% 이상~35% 이하에 대해 별도로 규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녹용은 회분함량 25% 이하만 인정기로 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녹용회분함량 기준 개정을 하면서 △녹용은 회분함량 25% 이하로 하고 △25% 이상에서 35% 이하의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녹용각' 등 별도 규격을 마련 유통되도록 하며 △향후 회분함량 이외의 유효성분 및 지표물질을 포함, 녹용의 규격기준을 전면 보완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원에국 서규용 신임국장 부임
채소특작과장에는 홍순기 전 채소과장

농림부 농산원에국장에 서규용 전농산정책심의관이 채소특작과장에 홍순기 전 채소과장이 임명됐다. 채소특작과 내 생약담당 사무관 및 공무원은 전 원예특작과 내 김홍범 사무관과 정종영 담당 공무원이 유임됐다.

▲농산원에국장 = 서규용 (徐圭龍)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졸업 △국립잡사소생사검사과장 △국립식물검역소 해충조사과장 △농림부 채소과장 한편 전 원예특작과 최용규 국장은 국제농업국장으

로 발령됐다. 교수부장 △국립국자공급소장 △농산정책심의관

▲채소특작과장 = 홍순기 (洪舜基)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졸업 △국립잡사소생사검사과장 △국립식물검역소 해충조사과장 △농림부 채소과장

한편 전 원예특작과 최용규 국장은 국제농업국장으

특용작물 과대광고
피해방지 단속강화

농림부는 천마·백복령·오미자 등 특용작물의 재배경험이 없는 농가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종묘 분양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대농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IMF 체제 이후 재배하기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농민들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광고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역내 특용작물 종자분양업체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농촌지도소·생약협회·종근협회 등을 중심으로 특용작물 종자분양업체를 파악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집중 관리토록 했다. 또 피해 발생유형에 따른 보상방법 등을 광고에 명시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